

집합투자기구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준

2009. 2. 4. 제 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하여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로부터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집합투자기구(이하“펀드”)의 집합투자규약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수수료”라 함은 펀드 및 투자일임자산·투자자문자산에 적용되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보수 :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
 - 가. 운용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채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 나. 성과보수 :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는 보수(법 제86조, 동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4-65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수령가능)
 - 다. 판매회사보수 : 펀드의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 라. 신탁업자보수 : 펀드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채산 보관자로서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 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또는 회사운영을 대신해 준 대가로 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보수
2. 선취(판매)수수료 :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펀드 매입(가입)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
3. 후취(판매)수수료 :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펀드 환매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비용
4. 환매수수료 :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경우에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하여 펀드에 귀속됨.

제4조(수수료 부과 기준) ① 회사는 수수료 부과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수준을 일관되게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③ 운용자산의 특성, 포트폴리오의 규모, 요구되어지는 서비스 수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책정되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절차) 수수료 수준의 결정은 제4조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근거로 하여 회사의

내부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마케팅부서와 운용부서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대한 사항은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190조제5항 본문에 다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고지) ① 회사는 투자광고(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공모 펀드인 경우 법 제124조에 따른 투자설명서 및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 사항) 상기 수수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관련 법규의 개정, 플러스자산운용이 영위하는 업무 범위의 변경, 내부 업무 절차 또는 조직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동 기준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에 불구하고 회사가 운용하는 펀드에 대하여 이 기준의 시행전 결정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